

제201회 영등포구의회  
2017년도 제1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 
관한 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【고 기 관 의원 대표발의】



2017. 6. 20.

行 政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 崔 光 默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 
관한 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## 1. 경 과

의안 제 246호로 2017년 6월 13일 고기관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6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 2. 제안이유

고용위기에 처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통한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을 보장하고, 이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‘청년’ 및 ‘청년정책’ 등 조례상 용어 정의(안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3조, 안 제4조)
- 다.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청년사업 추진·지원(안 제6조)
- 라.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영등포구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8조 ~ 안 제13조)
- 마.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(안 제15조)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고용정책 기본법」,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,  
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」

#### 5. 검토의견

○ 이 제정 조례안은 『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』에 따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해,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용위기에 처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꾀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, 총 1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○ 제정안의 주요내용은,

-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정의,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4조에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사항을 명시하였으며,
- 안 제5조에서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이며,
-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청년정책에 적극 반영해야할 사업과 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

명시하였음.

- 안 제8조부터 제13조에서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, 청년정책위원회 구성과 임기, 해촉, 회의개최, 수당 등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과 청년사업 추진을 위해, 위탁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음.
- 끝으로, 안 16조에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○ 검토결과,

본 조례안은 최근 급격한 사회변화와 서민 경기침체로 인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의 국가적 문제에 대해, 우리구의 역할과 중용성을 부각하고,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이고,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찾아, 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,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줌으로서, 청년들의 권익신장과 사회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# 참 고 자 료

##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

**제1조(목적)**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청년"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2. "중소기업체"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.

**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,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, 직업 지도,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·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기업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(이하 "기업등"이라 한다)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(이하 "대학등"이라 한다)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,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## 2

##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

**제2조(청년의 나이)**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"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과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<개정 2013.10.30.>

[전문개정 2009.12.15.]

## 3

## 고용정책 기본법

**제15조(고용·직업 정보의 수집 및 제공)**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과 구인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구직·구인 정보, 산업별·지역별 고용동향, 노동시장 정보, 직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정보, 직업능력개발훈련 정보,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 및 그 밖의 고용·직업에 관한 정보(이하 "고용·직업 정보"라 한다)를 수집·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6.4.>
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자·구인자, 직업훈련기관, 교육기관 및 그 밖에 고용·직업 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·배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6.4.>

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정보망과 고용보험전산망 등 고용 관련 정보통신망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6.4.>

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·직업 정보의 수집·관리를 위하여 노동시장의 직업구조를 반영한 고용직업분류표를 작성·고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. <신설 2011.7.25.>

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수집한 고용·직업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

하여 취업알선 등에 활용하게 할 수 있으며,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집한 고용·직업 정보를 제공받아 취업알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. <신설 2011.7.25.>

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고용 관련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그 밖에 고용촉진 및 취업지원과 관련되는 기관·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 <신설 2011.7.25.>

⑦ 고용노동부장관은 효율적인 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연계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 <신설 2011.7.25.>

**제18조(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)** ① 고용정보의 수집·제공과 직업에 관한 조사·연구 등 제4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한다.

② 한국고용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.

③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10.6.4.>

④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0.6.4., 2014.1.21.>

1. 고용 동향, 직업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정보의 수집·관리
2. 인력 수급의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정보의 제공
3. 고용안정정보망, 고용보험전산망 등 고용 관련 정보통신망 운영
4. 직업지도, 직업심리검사 및 직업상담에 관한 기법(技法)의 연구·개발 및 보급
5. 고용서비스의 평가 및 지원
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과 그 밖의 부대사업
7.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,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
-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.21.>
- ⑥ 한국고용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⑦ 한국고용정보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교육·연구기관, 그 밖의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.
- ⑧ 한국고용정보원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- ⑨ 한국고용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